

학부제운영규정

제 정 2009. 3.

제 정 2016. 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의 학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입생 모집) 신입생은 학부단위로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기초필수과목) 학부 내 각 전공의 이해와 전공이수에 필요한 기초 지식의 습득을 돕기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기초필수과목을 1학년 교과과정에 개설할 수 있다.(개정2016.02.01.)

제4조 (제1전공 배정신청) ①학부단위로 입학한 학생은 당초 입학한 학부에서 제1전공을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학부내에서 전공단위로 입학(모집)한 경우에는 입학한 전공으로 배정한다.(개정 2016.02.01.)

②제1항에서 정한 제1전공 배정 시기는 제1학년 2학기과정까지 이수한 이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부 운영상 특별 할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2학년 2학기과정까지 이수한 이후로 할 수 있다. (개정2016.02.01.)

③학생은 본인의 적성과 성적을 고려하여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중 교무처에서 정한 소정 기한 내에 제1전공 배정신청서를 지도교수확인을 거쳐 소속 학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6.02.01.)

④전공배정을 하지 않은 재입학생 및 휴학생은 재입학 또는 복학 시 제1전공 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6.02.01.)

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유전공학부(과)로 입학한 학생의 전공배정은 학생 희망전공의 해당학년 편제 정원의 최대 10%범위 내로 한정하며, 최종 전공배정은 학생의 성적, 외국어 능력, 전공과 관련한 자격증취득여부 및 교육과정특성을 고려하여 학과장이 조정하여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신설2016.02.01.)

제5조 (제1전공 배정심의) 제1전공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부에 전공배정위원회를 두며 학부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개정2016.02.01.)

제6조 (제1전공 배정인원 및 기준) ①제1전공의 전공별 인원배정은 학생의 희망에 따라 정하되 총장이 학교의 시설과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거 제1전공의 배정인원을 조정해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개정2016.02.01.)

1. 학생의 희망 및 지도교수 의견
2. 해당학년까지의 성적 또는 외국어 등의 수학능력
3. 기타 각 전공에서 정하는 기준

제7조 (제1전공 배정결과 공고) ①학부장은 전공 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제1전공자의 명단을 교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②교무처장은 총장의 결재를 얻어 제1전공자의 학적을 확정된 후 그 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전공이 확정된 학생은 전공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 (복수전공 및 부전공) 복수전공 및 부전공에 관한 사항은 학칙 및 관련규정에 의한다.

제9조 (조직) 학부에는 학부장 1인과 주임교수, 그리고 교수와 조교를 둔다.

제10조 (학부장) 학부장은 학부의 행정을 총괄하고 학부교수회의를 주재하며 학부의 교육과정, 수업운

영, 학생지도, 예산운영, 시설사용 등을 조정한다.

제11조 (주임교수) 주임교수는 학사관리를 담당하는 학사주임교수와 학생지도를 담당하는 학생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 다만 학부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부장 또는 주임교수 간에는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교수) ①교수는 학부소속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전공소속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②학부 내 전공과목 담당 시 동일분야 전공자가 다수인 경우에 분반하거나 분반하지 않을 경우 순환하여 분담하도록 한다.

제13조 (지도교수) 학부소속 학생의 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둔다.

1. 1학년의 지도교수는 학부의 모든 교수가 분담하도록 한다.
2. 제1전공이 결정된 학년의 지도교수는 학부 교수회에서 정한다.

제14조 (조교) ①학부의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조교를 둔다.

②학부조교는 주·야간을 구분하여 배정하거나 담당업무에 따라 사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③수업조교는 전공교수의 지시를 받아 전공수업을 보조한다.

제15조 (학부교수회) ①학부의 학사운영을 협의하기 위하여 학부교수회를 둔다.

②학부교수회는 학부장이 주재하며 교과배정, 수업운영, 강사위촉, 학생지도, 예산 및 시설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제16조 (기타) 학부제운영에 관하여 학칙과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